

1. 일반 원칙

치료 목적 사용 면제에 대한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UFC") 정책("UFC TUE 정책" 또는 "정책")은 UFC 반도핑 정책("UFC ADP")의 관련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정책에는 UFC TUE 정책에 맥락을 제공하는 다음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각 선수는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개인적인 의무가 있다. 선수는 자신의 *시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출처: UFC ADP, 제2.2.1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를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한 선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USADA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를 요청해야 한다. 단, TUE의 소급 적용 신청 처리와 관련하여 3절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모든 TUE 신청서는 USADA에 의해 설립된 치료 목적 사용 면제 위원회("TUEC")에서 평가한다.

선수에 대한 응급처치 때문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경우, 선수는 치료 시작 후 가능한 한 빨리 응급처치와 관련된 의료진의 서면증명과 함께 USADA에 TU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응급 TUE 요청에 대한 결정은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TUEC에서 한다.

경고: 다양한 약물에 대한 배설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 약물과 관련하여 선수는 반도핑 정책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시합에 출전하기 전에 해당 약물이 인체에서 사라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물론 투약 중단은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선수의 의사와 상의하여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한 평가 없이 절대로 투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반도핑 정책을 위반할 위험 없이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적으로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TUE를 얻는 것이다.

2. 용어 정의

이 UFC TUE 정책과 관련된 용어 정의의 전체 목록은 UFC ADP의 부록 1에 나와 있다. 또한, 아래에 열거된 정의는 이 정책을 적용할 때 특히 중요하다. 본 정책의 전반에 걸쳐 본 절에서 아래에 설명하는 것처럼 UFC ADP에서 정의된 용어는 기울임꼴로 표시되며 이 UFC TUE 정책과 관련된 용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비정상분석결과: 시험실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련 기술문서에 따라, 시료에서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의 존재를 확인하거나(내인성 약물의 수치 상승 포함), 금지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WADA 인증 시험실 또는 기타 WADA 승인 시험실의 보고서.

선수: UFC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UFC 시합의 선수로 출전하거나 UFC 시합의 선수로 출전 예정인 모든 격투기선수.

체육위원회: 종합격투기 경기 또는 그러한 경기의 출전자를 규제, 승인, 제재 또는 인가하는 권한을 가진 주 또는 기타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인정한 규제기관.

시합: UFC에서 주최하거나 달리 운영하는 종합격투기 경기 또는 비공식 시합.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중"이란 예정된 체중 검사 개시 6시간 전에 시작하여 시합 종료 후 6시간 후에 종료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금지목록: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목록을 말한다.

TUE: [UFC ADP] 제4.4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치료 목적 사용 면제를 말한다.

TUEC: TUE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해 USADA가 설립한 위원회.

사용: 모든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여하한 방법으로 사용, 적용, 섭취, 주입 또는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3. UFC 선수를 위한 정책

USADA는 이 UFC TUE 정책에 따라 UFC 선수들의 TUE 신청서를 처리한다.

UFC 선수는 USADA에 언제든지 금지약물에 대한 TUE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작성하여 USADA에 접수해야 한다.

- a. 선수가 시합에 출전할 예정이 아닌 경우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기 최소 21일 이전, 또는
- b. 선수가 향후 90일 이상 지난 후에 시합에 출전할 예정인 경우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기 최소 90일 이전, 또는
- c. 선수가 90일 미만의 사전 통지로 시합에 출전할 예정인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USADA는 늦게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TUE 소급 적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USADA는 그러한 상황에서 TUE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으므로 선수는 지연 제출로 인한 위험을 본인이 감수하게 된다. 또한, 이 경우 선수는 해당 제출이 선수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USADA가 판단하면 TUE 신청서 처리 비용 전액이 부과될 수 있다.

USADA는 선수의 의도된 사용에 앞서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늦게 제출된 TUE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해당 기간에 따른 TUE 신청서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

또한, TUE 소급 신청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만 고려된다. 선수는 사전에 TUE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며 그러한 사용이 반도핑 정책 위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TUE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4. 체육위원회와의 조정

UFC 또는 USADA는 관련 체육위원회와 TUE 신청서 조정을 시도한다. UFC 선수는 통보를 받게 되지만, UFC 및 USADA는 UFC TUE를 인정할지 아니면 자체적인 TUE를 승인할지에 대한 체육위원회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UFC 선수는 체육위원회 TUE가 확정되었는지 확신하지 않는 한 체육위원회에서 금지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수가 체육위원회나 기타 반도핑기구로부터 TUE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UFC TUE를 신청해야 한다. USADA가 TUE 신청서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선수는 USADA TUEC의 결정을 포함하여 TUE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되거나 고려된 기타 정보가 해당 체육위원회와 공유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5. 이의제기

TUE가 거부되는 경우, TUE 신청서가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선수에게 제공된다. 모든 선수는 거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USADA 과학감독관(Science Director)에게 연락하여 USADA에 의료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선수는 UFC ADP 및 이 UFC TUE 정책에 규정된 행정심사가 완료된 후에 UFC ADP의 부속서 A의 청문 절차에 따라 TUE 거부에 항소할 수 있다.

6. 발효일

이 UFC TUE 정책(버전 1)의 발효일은 2015년 7월 1일이다. 본 정책은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7. 수정

이 UFC TUE 정책은 *USADA*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수정은 상기 6절에 명시된 정확한 발효일(버전 포함)과 함께 *UFC* 반도핑 웹 사이트 (UFC.USADA.org)에 게시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각 선수는 *UFC*의 반도핑 웹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본 정책과 기타 반도핑 관련 정책의 최신 버전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